

[사법농단 ISSUE PAPER ③]

사법행정권 남용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

2018. 7. 3. (화)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목차>

1.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 성향과 추천 개입 등

가. 사안의 개요

나. 공개된 문건 목록으로 본 사법행정권 남용의 시간적 순서

다.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조사의 경과

2) 발견된 주요 문건의 정리

라. 사법농단의 실체

마. 평가

2.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

가. 사안의 개요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조사의 경과

2) 발견된 주요 문건의 정리

다. 사법농단의 실체

라. 평가

사법행정권 남용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

1.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 성향과 추천 개입 등

가. 사안의 개요

2015. 12. 경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전국 법관들의 대표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사법부 주요 행정현안 결정에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기로 합의한 뒤¹⁾, 2016. 2. 19.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활성화”를 명목으로 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이라는 대법원규칙을 제정, 공포하였다.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하여 2016. 1. 29.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토론회에서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방안에 관한 소고’를 발표하는 등 사법행정참여에 대한 관심 및 논의가 심화될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한 여론 및 위원회 자체를 통제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사법행정 참여에 관한 판사들의 의견 개진을 모니터링하고 비판적인 판사들을 핵심 그룹 등으로 나누어 고립화시키는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또한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위원회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 등을 파악하여 후보자 추천 명단을 작성하고 각 고등법원장에게 정보 제공하여 추천 과정에 개입하기도 하였다.

1) 법률신문(2015. 12. 9.), 홍세미기자, “상고심제도 개선·사실심 충실화 논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7165>

나. 공개된 문건 목록으로 본 사법행정권 남용의 시간적 순서

◆ 2016년

1. 29.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토론회에서 송오섭 판사가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방안에 관한 소고’ 발표
2. 1.	송오섭 판사가 코트넷 제도개선법관토론헬에 ①사법행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판사회의 선출이 필요하며 ②위원회를 총괄하는 전체회의를 만들어야 하며 ③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각급 법원 판사회에서 논의하도록 내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 게시
2. 2.	‘송오섭 판사 건의문 검토’ [19] (김모 심의관 작성, 임종현 차장 지시)
2. 15.	김기영 부장판사가 법률신문에 송오섭 판사의 주장을 소개하는 ‘판사와 사법행정’이라는 칼럼 기고
2. 23.	경향신문이 송오섭 판사의 주장을 소개하는 기사 게재
2. 24.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229, 325] (김모 심의관 작성, 임종현 차장 지시)
2. 26.	인사모가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3. 14.	‘판사회의 순기능 제고방안(운영 측면 검토)’ (기획제2심의관실 명의)
3. 28. 경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327, 402, 328, 326] (김모 심의관 작성, 임종현 차장 지시)

4. 2. 경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취합 결과’[329, 330, 332, 403, 333] (기조실 심의관들이 나누어 작성한 것을 김모 심의관이 취합하여 작성)
4. 4. 경	‘사법행정위원회 추천법관 검증’[297, 298, 299, 301, 302, 303]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기조실의 요청으로 작성)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331, 401, 352] (김모 심의관 작성)
4. 5. 경	‘사법행정위원회 안전제출 활성화 관련 보고’[20] (사법행정위원회 통합실무지원단 간사인 임모 심의관이 작성하여 임중헌 차장에 보고)
4. 8.	‘사법행정위원회 향후 운영계획’ (사법행정위원회 통합실무지원단장이던 심모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작성)

다.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조사의 경과

추가조사위원회는 문건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 특정 연구회 회원인지, 특정 연구회 회원과 친분 관계가 있는지, 정치적 성향 등을 기준으로 핵심 그룹과 주변 그룹 등으로 규정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은 일정 집단의 법관 등을 특별히 취급하거나 배제의 요소로 이용할 여지가 있음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① 정치적 성향, ② 특정 성향의 다른 법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③ 특정 연구회 소속

여부 등은 사법행정위원회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음

- 행정처가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각 고등법원장에게 후보자 추천 기준에 따른 법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각 고등법원장의 추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아래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서 언급된 보고서 중 공개된 보고서에 한하여 보고서 목차와 별개로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조사보고서에서 각 문서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2) 발견된 주요 문건의 정리

◆ 송○○ 판사 건의문 검토 / 기획조정실 [19]²⁾

[주요 내용]

- 송 판사의 특징(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리더), 1/29 ‘인사모’ 토론회 발표 및 참석자 기재
- 송 판사의 게시 글에 대한 댓글을 수시로 파악하여 판사들의 호응도 살핌
- 법원행정처 확정안인 ‘권역별 고등법원장 추천방식’과 건의사항인 ‘과반수 이상 판사회의 선출방식’을 검토
- 송 판사의 주장이 그다지 새로운 것이 없으면서 다만 그의 주된 관심이 사법행정위원회를 판사회의를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고 봄
- 송 판사가 인사모에서 발제한 발표문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관료적 사법행정체계는 헌법의 요청에 맞지 않으므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그 개정 전까지는 판사회의를 활성화 및 사실상 의결기구화하여 수평적·민주적 법원운영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기재

2)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인용례에 따름. 이하 같음.

김☆☆ 심의관이 임종현 차장의 지시로 작성한 문건이다. 송○○판사를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리더’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인사모’의 2016. 1. 29. 토론회 참석자 등의 명단을 작성하고, 송○○판사가 2016. 2. 1. 코트넷에 게시한 게시물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위 문건은 송○○판사의 토론회 발표문이 ‘논란 가능성이 높은 예민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심☆☆ 심의관은 특별조사단의 조사에서, 송○○판사의 특징 등은 평소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알게 된 사실을 기재하였고, 임종현 차장은 위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추가적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기획조정실 [229]

[주요 내용]

-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으로 ‘사법행정위원회’ 출범 의의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다수 일반 판사들의 호응을 차단하고 핵심 그룹을 고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기재
- 핵심 그룹은 우리법연구회 전, 현 회원이고 주변 그룹은 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라고 하면서 명단 작성

김☆☆ 심의관이 임종현 차장의 지시로 작성한 문건이다. 문건은 송○○판사가 2016. 1. 29.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토론회에서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방안에 관한 소고’를 발표한 것을 기화로 송○○판사의 ‘특징’, ‘주된 관심사’를 정리하면서 송○○판사의 주된 관심이 ‘사법행정위원회의 활성화’보다는 ‘판사회의의 활성화’에 있다고 지적하며 ‘판사회의라는 회의체 중심의 수평적 사법행정’을 지향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후 송○○판사가 2016. 2. 1. 코트넷의 ‘제도개선법관토론평’게시판에 위 발표

문을 게재하자 위 게시글에 대한 조회수, 댓글 등을 분석하면서 댓글을 단 판사들이 대부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거나 ‘송판사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일부판사’로 정리하는 등 댓글을 단 판사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고, 전○○ 부장판사에게 확인하여 송판사와 친분이 있는 서울중앙지법 소속 모판사가 위 게시글에 대한 댓글작성을 부탁한 사실까지 확인하는 등 위 게시글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2016. 2. 15. 법률신문에 동일한 논지의 칼럼을 기고한 김○○ 판사가 위 칼럼을 기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분석하며 송○○판사와의 인연을 추적하고 송○○판사의 부탁을 받아 게재한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였다.

이후 2016. 2. 23. 경향신문에 송○○판사의 주장을 소개하는 기사가 게재된 것을 두고 송○○판사 등이 코트넷 게시글을 경향신문에 전달한 것을 추정된다고 정리하고, 이후 ‘인사모’의 토론회에 대해서 정리, 참석예정인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확인하였다.

이러한 정리를 통하여 해당 문건은 ‘우리법연구회의 전현 회원들’을 ‘핵심그룹’으로 칭하며 ‘조직적 활동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평가하고, 송○○판사가 ‘사법행정위원회’라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송○○판사가 행정처 내부 인맥을 활용하여 행정처 보고서를 입수하였으리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소위 ‘핵심그룹’의 조직적 활동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핵심그룹이 다수 일반판사들의 호응을 얻는 것을 차단하고 고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송○○판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이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하였고, 대응안으로 2016. 2. 25.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 코트넷 공지문을 ‘인사모’의 토론회 전에 선제적으로 게시하는 방안을 계획하였다.

이에 대하여 임종현 차장은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핵심그룹’, ‘주변그룹’에 대해

개인적으로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 명단을 관리한 사실은 없고 이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추가적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김☆☆ 심의관은, 임종헌 차장으로부터 송○○ 판사의 위 건의문 등에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위촉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개혁적인 성향의 위원들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 문건을 작성하였고, 후보자 추천 명단에 포함된 후보자를 어느 위원회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검토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었다고 진술하였다.

◆ ‘판사회의 순기능 제고방안(운영 측면 검토)/ 기획제2심의관실 (16. 3. 14.)

[주요 내용]

- 사법행정 간섭을 목표로 판사회의를 이용하려는 조직적 시도 포착하였다고 하면서 2016. 2. 인사모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토론회, 2015. 12. 21. 인천지법 판사회의 내규 개정(내부판사회의 의장 선출직으로 변경 / 내부판사회의 3회 소집 명시), 2016. 2. 1.자 송 판사 게시글(‘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과 2016. 3. 14.자 김 부장판사의 게시글(‘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2차 건의문’) 거론
- 내부판사회의 폐지 등을 통한 판사회의 억제 시도시 핵심세력에 동조하지 않는 일반 법관들까지 집단적 반발 가능성 있다고 봄
- 법원장 주도의 의견 수렴 및 안건 선정(해외연수 선발을 희망하는 판사들은 법원장의 부탁에 적극 동조하는 경향이므로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함)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소통 이미지 선점하면서 법원장이 해계모니 장악
- 일반직 직원으로 하여금 판사회의에서 현안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장의 중립적 이미지 취득, 부정적 답변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는 해당 실무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기재
- 판사회의에서 심의기구로서의 성격을 초과하는 내용의 발언 등 부적절한 안건 또는 의사진행발언이 제기되는 경우 사법행정의 ‘민주화’는 ‘판사의

뜻'에 따른 행정이라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른 행정이라는 논리로 핵심 세력의 '민주/비민주' 프레임을 역이용하고, 판사회의의 헌법적/법률적 한계를 명확히 인식시킴으로써 판사들의 '합법성에 관한 민감성'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검토 내용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기획조정실 [327]

[주요 내용]

-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해 비판적 여론을 주도 하고 있는 송00판사를 비롯,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토론회 등 추적하고, 위 판사모임을 '핵심그룹'이라고 칭하며 이들의 비판을 의식하여 위원후보자 조건 제시, 검토함
- 각 고등법원장이 '왕당파' 위주로 위원 추천할 경우 핵심 그룹에게 공격 기회 제공하는 셈이라면서 핵심 그룹과 유대관계가 있으면서도 균형감각을 갖춘 법관 등을 발굴하여 고등법원장에게 정보 제공할 필요 있다고 함
- 후보자 추천 명단과 관련하여 1(적색), 2(청색), 3(흑색) 순위로 분류하고, 법원문화개선위원회와 재판제도발전위원회에 어떻게 나누어 배치할지 검토
- 검토 심의관은 우리법연구회, 노동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회원 명단을 다른 심의관들에게 전달하며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대상사자와 추천사유를 정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진술

김☆☆심의관이 2016. 2. 28.경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다른 심의관들 도움받아 작성, 보고한 문건이다. 소위 '핵심그룹'을 칭해지는 판사들이 사법행정위원회가 출범한 뒤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판을 제기할 것에 대응하여 각 고등법원에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법관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취합 결과 [329]

[주요 내용]

- 추천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적색: 1순위 검토, 청색: 2순위 검토, 굵은 흑색: 3순위 검토, 얇은 흑색: 검토하지 않은 추천자’로 분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2016. 4. 2. 나누어 작성하고, 김☆☆심의관이 취합하였다. 추천된 위원들의 성향 및 특이할만한 경력 등을 정리하고, 송○○판사와의 인연까지 확인하고 있다.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기획조정실 [331]

[주요 내용]

- 사실상 사법행정위원회를 행정처의 의도대로 움직이기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대외적으로는 자발적으로 위원이 추천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작업. ‘부작용은 안건 선정으로 통제’와 같은 시각을 드러냄
- ‘주류 법관’과 ‘핵심그룹’으로 나누어 ‘핵심그룹’을 소수입장으로, 행정처의 입맛에 맞는 생각을 하는 사람을 ‘주류법관’으로 칭하고, 재판제도발전위원회에 이를 반영할 세력이 적게 추천된 점을 우려함
- 위촉권자인 법원행정처장의 재량권을 발휘할 방안을 주로 검토

김☆☆심의관이 2016. 4. 4.경 작성하였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에 대하여 평가하였는데, 단수추천을 통하여 소위 ‘핵심그룹’이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비판할 여지를 줄이는 대신 법원행정처가 각 위원회의 안건을 선정함으로써 사실상 법원행정처의 의지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부작용’이라고 언급하고 ‘통제가능하다’고 평가하였다.

한편으로는 단수추천의 부정적 요소로서 ‘위촉권자인 법원행정처장의 재량 부존재’라고 평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주류 다수 법관’의 입장을 대변할 법관이 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사실상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관을 ‘주류 다수 법관’이라고 평가하고 있음이 보고서에서 드러나고 있다.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취합 결과 [329]

[주요 내용]

- 추천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적색: 1순위 검토, 청색: 2순위 검토, 붉은 흑색: 3순위 검토, 얇은 흑색: 검토하지 않은 추천자’로 분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2016. 4. 2. 나누어 작성하고, 김☆☆심의관이 취합하였다. 추천된 위원들의 성향 및 특이할만한 경력 등을 정리하고, 송○○판사와의 인연까지 확인하고 있다.

◆ 사법행정위원회 추천법관 검증 (인사실 송부용) / 기획조정실 [297]

[주요 내용]

- 추천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특기사항으로 기초실 추천군 포함 여부, 성향 등을 좀 더 상세히 기재
- 특별조사단 조사에 의하면, 인사총괄심의관실은 기초실로부터 송부받은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명단에 관하여 개별 위원들에 대한 평정 자료 등을 확인하고 특기사항 일부를 추가하여 기초실에 송부했다고 함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2016. 4. 4.경 기획조정실의 요청으로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에 전달한 문건이다. 이 문건은 2016. 4. 2.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329]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취합 결과 문건에 기재된 내용에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양식을 바꾸어 작성한 것이다.

문건에는 각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위 [329]문건에 비해 더욱 자세한 설명이 붙어있으며, 각 위원의 성품에 대한 평가, 사법행정예 협조적인지 여부, 출산 등의 개인사, 코트넷에 게재했던 글의 성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성향에 관한 기재

중에는 ‘해외시찰 5회 ☞ 사법부로부터 많은 혜택받음’, “사법행정에 협조적”, “당돌하고 예절감이 부족하다는 평”, “배석 당시 과도한 스트레스로 업무지장 호소”, “술을 하지 않음(회식자리에서 잘 어울림)”, “별다른 특색이 없는 평범한 판사”, “지역거점법관”, “다소 까다로운 성격이나 많이 개선되었다는 평, 여성편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평”, “인사에 대한 요구 내지 불만이 많음”, “진보성향 젊은 법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보유”, “상당기간 병가 사용”, “조직적합성이 뛰 어남” 등의 평가를 내리고 있기도 하다.

◆ 사법행정위원회 안건제출 관련 보고(임○○수정)/통합실무지원단 [20]

[주요 내용]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특정 성향의 법관이 상당수 참여하여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저하되었다고 판단하고 기존에 마련한 안건제출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검토의견
- ‘코트넷 전용공간을 통한 안건 제안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안건 제출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라는 프레임 설정이 가능하다고 판단
- 다양한 경로로 일선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급성, 중요성,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안건이라고 대외적으로 소개하면서 통합실무지원단에서 준비한 안건 중 위원회에서 첨예한 논쟁과 충돌 가능성이 낮은 안건을 논의 안건으로 결정할 것을 제안
-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의하면, 안건 제출기간 마지막 날에 법원문화개선 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 모두에 20건 이상의 안건이 제출됨

사법행정위원회 통합실무지원단 간사인 임●●심의관이 2016. 4. 5.경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하였다. 2016. 4. 1. 각 고등법원장의 위원 후보자 추천이 완료된 이후 해당 위원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소위 ‘특정성향의 법관이 상당수 참여’하게 되었다면서 ‘다수 법관의 의사를 대변할 위원은 소수’라고 평가하였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는 법원행정처의 입맛에 맞는 주장을 해줄 위원의 수가 적다는 평가와 같은 의미로 보인다)

그러면서 위원회 논의 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건 제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시행하지 않고, 통합실무지원단에서 준비한 안건 중 위원회에서 논쟁 등 충돌이 가장 낮을 것으로 보이는 안건을 논의안건으로 설정하고, 회의 전까지 별도로 안건에 대해서 알리지 않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통합실무지원단이 안건을 제안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코트넷 전용공간을 통한 안건 제안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안건 제출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프레임 설정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 사법행정위원회 향후 운영계획/통합실무지원단 [21]

[주요 내용]

- ‘특정성향’의 법관과 ‘다수 법관’의 성향이 대립하는 것으로 이해
-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회의자료 등을 통해 회의 결과 등을 통제할 목적 세움
- 사안 및 위원회 별로 보고서의 상세정도 등을 통제하여 일선 법관에게 전달되는 정보 내용 통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행정처의 입장을 대변할 법관이 상대적으로 소수라는 점을 강조하며 회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 정지작업을 하기로 정리하였다. 그러면서 2016. 4. 8. 현재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법원문화발전위원회’의 경우 민감하거나 예민한 안건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건당 간략한 쟁점위주보고서 방식을 채택하고, ‘재판제도 개선위원회’는 모든 쟁점을 분석정리하는 정도의 상세한 보고서 작성을 검토하는 등 보고서 작성 양식을 달리하여 회의 내용 전달의 정도를 조절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회 통합실무지원단장이던 심⊗⊗

당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2016. 4. 8.경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작성하여 보고하였고, 임종헌 차장, 심⊗⊗ 당시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임●●심의관 모두 실제로 시행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한다. 이 문건에 대하여 특별조사위원회는 문건 중 ‘회의 진행에 관한 시뮬레이션 및 대응방안 검토’ 부분에 관하여, 회의 진행에 관한 시뮬레이션이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평가하였다.

라. 사법농단의 실체

상고법원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에 대해 독단적이라는 비판이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 제기되자 쌍방향 소통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선에서 미국 연방법원 법관들이 참여하는 ‘상임위원회’를 모델로 검토가 시작되었다가 양대법원장 지시로 급물살을 타 사법행정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고 2016. 4. 4.경 대법원 측에서 설명하였다(뉴시스 2016. 4. 4.자).

2016. 4. 11.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위원회 위촉식에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집단지성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논의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건설적 논의를 부탁하였다. 행정처는 법원 내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선 판사를 참여시켜 사법행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위원회를 설치했다면서 행정처장이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인력을 추천받아 임명했다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주요 행정현안 결정에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는 것을 명분으로 만든 ‘사법행정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법행정의 수평적 운영을 기대하는 법관들의 움직임을 ‘소수의 핵심세력’이라고 전제한 뒤, 이들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송○○판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판사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부터 추천기준을 법원행정처가 각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구성될 위원회의 안건을 통제하여 논의방향

을 법원행정처가 예측가능하도록(사실상 법원행정처가 원하는 논의결과가 도출 되도록) 통제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목적에 방해가 될 ‘핵심세력’에 대하여 사실상 사찰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노조는 2018. 5. 30. 양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도 포함시킨바 있다.

마. 평가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평가³⁾가 포함되어 있다.

- 사법행정권자가 후보자 추천 명단을 작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사법행정위원회의 제도적 취지에 반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한 목적을 의심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음
- 실제로 작성된 후보자 추천 명단에 기재된 성향, 다른 법관들에 대한 영향력, 특정 연구회와의 관계 등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고, 후보자 추천 명단에 필요 최소한의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후보자 추천 명단에 기재된 내용이 추후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처장이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므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인사검증 자체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사법행정위원회 추천법관 검증’[297] 문건에서 사법행정에 협조적인 것을 인사 검증의 요소 중 하나로 들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 검증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정보가 기재된 명단이 작성되었다고 보임
- 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에서 위와 같은 명단을 작성하고 추천권자에게 일부 정보를 제공한 것은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보임
- 행정처의 위와 같은 검토 사항 중 ‘회의 진행에 관한 시뮬레이션’,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위원에게 적절한 지침 제공’이 실제로 시행되었다고 확인되

지 않았고 ‘안건제출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다수의 안건이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검토 사항은 사법행정위원회를 행정처의 의도대로 제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것으로서 이를 검토한 것만으로도 사법행정위원회의 일선 법관의 자발적 사법행정참여라는 당초 출범 취지에 위배되는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보임

결국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일선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소위 ‘핵심세력’으로 일컬어지는 판사들의 지적처럼,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보이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 하겠다. 위와 같은 목적에 방해가 될 ‘핵심세력’에 대하여 사실상 사찰을 진행하였던 점,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군에 대하여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목록화 한 점, 사법행정위원회의 논의 안건 및 회의 보고서 등의 상세정도를 조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일선 판사들에게 전달되는 정보를 통제하려 한 점 등이 인정된다.

특히 위와 관련한 문건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주로 작성하였는데, 법원사무에 관한 규칙에 따르더라도 기획조정실의 업무는 1.기획조정실장 및 기획총괄심의관 보좌 2. 사법행정과 재판과정에서의 소통정책의 기획 및 집행 3. 복지정책의 총괄 기획 및 집행 4. 기획조정실장 및 기획총괄심의관이 지정한 업무라는 점에 비추어보건대, 비록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업무가 기획조정실의 업무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원구성, 회의 주제, 보고서 세부정도 규정을 통한 정보통제 등은 그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바 이를 주도하고 실행한 법원행정처 주요 인사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법원행정처는 ‘인사모’ 등의 특정 판사들을 ‘핵심세력’이라 규정짓고,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위원회를 사실상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대변하는 새로운 기구로 도입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특정 기준을 도입하여 후

3) 특별조사위 조사보고서 p. 71~72 참고

보군 명단을 작성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다. 또한 이를 각 고등법원장에게 제시하는 등 고등법원장들의 추천권을 침해하여 직권을 남용하였고, 심지어 위원으로 추천된 판사들의 성향 및 개인적 성격 등 불필요하게 과도한 내용이 포함된 명단을 작성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역시 남용하였다. 가사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이 될 추천법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도한 정보를 기재하고, 법원행정에 협조적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법부 내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목적에서 도입된 사법행정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법행정권의 행사로서 부적절하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위원회에 관하여 ‘위원 중 주류 법관의 논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부장판사 부족’, ‘특정 성향의 법관 상당수 참여’ 등을 이유로 사법행정위원회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었다는 전제에서 ‘회의 진행에 관한 시뮬레이션’,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위원에게 적절한 지침 제공’, ‘안건제출 활성화 방안 미시행’ 등을 검토하였다. 위와 같은 검토 사항은 사법행정위원회를 행정처의 의도대로 제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것으로서 이를 검토한 것만으로도 사법행정위원회의 일선 법관의 자발적 사법행정참여라는 당초 출범 취지에 위배되는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에 해당한다.

더불어, 위와 같은 법원행정처의 일선 법관에 대한 사찰은, 사찰당한 법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찰행위를 실행하고 법관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야 했던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며, 법원행정처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곧 배제의 원리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점은 일선 법관들로 하여금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또한 위헌적이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

가. 사안의 개요

법원행정처가 2015년,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개입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활동 및 단독판사들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재편 또한 단독판사회의 제어라는 관점에서 검토한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행정처는 2014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김○○ 판사가 단독판사회의 의장을 맡은 이후 ‘연장자순’으로 의장을 하면서 적극적 의견 개진을 하지 않던 단독판사회의의 관례가 깨지는 것을 경계했다. 특히 2016년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대해서는, 박상옥 대법관 임명 제청에 반대 의견을 ‘코트넷’에 올린 박노수 판사가 출마한다는 소식을 사전에 탐지하고, 위 박노수 판사의 과거 이력, 경선 출마의 경위, 지지 법관들의 세부 동향까지 파악하고, 그 대응 전략으로 다른 경선 참여 판사의 의장 경선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문건들이 발견되었다. 박노수 판사 당선 이후에는, 단독판사회의의 영향력을 최대한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매우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그 일환으로 수석부장판사제도를 재편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건들에는 법원행정처가 법원행정처의 공식자문기구인 판사회의의 활성화를 방해하여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막고, ‘법원장’의 권한을 수호하려고 역력히 노력한 흔적들이 선연하다. ‘사법농단’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조사의 경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2018. 1. 22. 발표한 조사보고서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이라는 문건[322]에 대해 조사하였고(위 보고서 17~18면 참조),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2018. 5. 25. 발표한 조

사보고서는 위 문건의 내용과 관련 있는 7건의 추가 문건을 분석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2) 발견된 주요 문건의 정리

◆ 단독판사회의 관련보고 [50. 189]

김★★ 당시 서울지방법원 기획법관⁴⁾이 2015. 3. 12.경 현안보고의 일환으로 작성하여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그 내용은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인 김○○ 판사가 2015년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의 입후보 방식으로 자원 및 2인 이상의 추천을 제시하고, 최선임자 6인에 대하여 입후보를 독려하였으나 모두 거절한 사실을 정리하면서, 이에 관한 “전망”으로 “입후보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장이 입후보 절차를 공지하였고, 그 절차에 큰 하자가 없는 이상, 공지된 절차에 따라 입후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김○○ 판사는 제3의 후보(특히, 인권법 학회 회원)를 물색하여 입후보를 독려할 가능성 있음”, “장○판사, 또는 실질적인 독장이라고 할 수 있는 30기 최선임자 정○○ 판사가 의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제3의 후보가 입후보한다면 작년과 같이 경선이 예상됨.”, “소수의 의사가 다수 의견인 것처럼 호도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판사회의 당일 적극적인 출석을 독려 중”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즉, 법원행정처가 현안보고 일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의 의장으로 인권법학회 회원 등 법원행정처의 입장에 비판적인 판사들이 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바람직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조치를 검토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특별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김★★ 기획법관은 “소수의 의사가 다

4) 2013. 2.부터 2015. 2.까지 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이었고, 2015. 2.부터 2017. 2.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획법관이었음(조사보고서 108면 참조).

수의견인 것처럼 호도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판사회의 당일 적극적인 출석을 독려 중” 부분은 현안 보고를 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할 수 없어 기재한 것이다, 의사정족수 충족을 위하여 단독판사회의 일정 공지를 하면서 판사회의에 참석하여 달라는 취지를 기재한 것 외에 별도로 출석을 독려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 단독판사회의 관련보고 [51. 190]

김★★ 당시 서울지방법원 기획법관이 2015. 3. 17.경 현안보고의 일환으로 작성하여 임종현 기초실장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같은 달 16.경 진행된 단독판사회의의 경과, 결과, 전망을 기재한 것이다. “경과”에 관하여, “전 의장인 김○○ 판사는 경선을 유도”, “입후보자 추천결과 → 장○, 이○○, 정○○ 판사 추천됨”, “장○ 판사가 선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여 장○ 판사 추천 추진하였고, 장○ 판사가 사퇴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 판사도 추천 추진하였음”, “김○○ 측은 제3의 후보들에게 입후보 의사를 타진 → 별다른 성과 없자 이○○ 판사를 추천한 것으로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김○○ 측의 의중과 다른 ‘바람직한’ 후보 선출을 위한 추천을 추진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결과”에 관하여, “김○○ 판사는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관례대로 최선임자가 의장이 되었음. 또한 투표 결과 만장일치 찬성이어서 관례대로 박수에 의해 추대하는 형식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결과 → 김○○ 판사의 의도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함. 지지기반 상실.”, “2014년에는 단독판사회의 집행부가 매월 모여 ‘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단독판사회의 내 ‘사무분담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운영 → 2015년에는 이와 같은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문건을 통해서 법원행정처가 김○○ 판사가 이끌었던 2014년 단독판사회의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며 특히 ‘사무분담 연구모임’을 결성하는 등의 움직임을 견제하였고, 2015년에 위와 같은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2015년 단독판사

회의 의장 선출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한 특별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김★★ 기획법관은 특정 판사를 추천 추진하였다는 점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선임 기수인 29, 30기 단독판사들이 위 추천을 추진하였다는 것으로 자신이 추천을 추진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특별조사단은 맥락상 김★★ 기획법관이 직접 장○, 정○○ 판사의 추천을 추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민사부 인사 관련 문제 점검 [52]

성명불상자가 작성하여 임종현 차장에게 보고한 문서로, “부장판사 업무 관련”, “전담법관의 역할 문제”, “인사 및 사무분담에 대한 단독판사들의 정서”, “합의·항소 부장과 단독부장, 단독과 배석 사이의 사무분담 교류 문제”, “일반직 사무분담 문제 - ○○○ 전담법관 재판부에 배치된 ○○○ 참여관”, “2016년 정기인사 운용방안” 등 인사 관련 여러 문제들을 정리한 6면짜리 문건이다.

위 문건 중 “인사 및 사무분담에 대한 단독판사들의 정서”에 관하여는, “2014년 단독판사회의 의장인 김○○ 판사(30기)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법관의사무분담에관한지침’을 개정하려는 움직임 있었으나 좌절”이라고 평가한 후, “현재 내규 개정에 대한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태”라고 하면서 세부적인 설명으로 “2015년 상반기 단독판사회의에서 김○○ 판사의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추진 움직임(장○, 이○○, 정○○ 판사 등에게 후부로 나서 줄 것을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선임자인 장○ 판사의 단독 후보 출마로 귀결되어 만장일치로 최선임자가 의장이 되었음 → 김○○ 판사의 의도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함. 예전과 같은 지지세력 부재”, “2014년에는 단독판사회의 집행부가 매월 모여 ‘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7월에 메일로 공지 절차를 거쳐 단독판사회의 내 ‘사무분담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운영’ → 2015년에는 이와 같은 활동이 어려운 상태이며, 현재까지 연구모임 결성 등 메일 공지도 없는 점에 비추어, 올해는 작년과 같은

사무분담 내규 개정을 위한 시도는 없을 것으로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문건 [51]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이고, 법원행정처가 단독판사회의를 통해 일부 판사들이 사무분담을 ‘희망’을 1순위로 하는 것으로 지침 개정을 시도하는 것을 견제하고, 이와 관련하여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개입하게 된 점을 보여준다.

나아가 위 문건은 “단독판사 동향”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 단독판사 동향

- 김○○ 판사(30기, 중액단독): 2014년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서 사무분담 내규 개정 추진하다가 좌절. 올해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을 추진하였다가 좌절된 이후, 박○○ 판사(30기, 폐암 투병 중) 모금활동에 관여하는 외에는 별다른 활동 없음
- 허○(30기), 신○○(32기) 판사: 2014년 사무분담 내규 개정을 위한 연구모임에 참여하고 김○○ 판사의 지지세력 형성. 김○○ 판사가 의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올해에는 별다른 활동 없음
- 이○○ 판사(29기, 신청단독): 서기호 의원 법원 재직 시절 함께 법관인사제도나 신○○ 대법관 사태에 관하여 문제 제기한 적 있으나,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성격이어서 올해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도 추천을 거부하는 등 별다른 활동 없음
- 이○○ 판사(31기, 중액단독): 박○○ 판사 게시글에 응원 댓글을 단 적 있으나,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별다른 활동 없음
- 박○○ 판사(31기, 파산·희생단독): 4. 16. 코트넷 자유게시판에 박○○ 후보자 임명 반대 글을 게시. 현재 별다른 활동 없으나, 돌발 행동 배제 못함

이는 주로 법원행정처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2014년 단독판사회의 의장이었던 김○○ 판사는 물론 그와 함께 연구모임에 참여했던 판사들, 법관인사제도나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관하여 문제 제기한 적이 있는 판사들, 2015. 4. 16. 코트넷 자유게시판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검사로 진상을 은폐하려 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글을 게시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노수 판사,⁵⁾ 위 글에 호응하는 댓글을 단 다른 판사들의 동향까지 파악하여 상세하게 관리한 것으로,⁶⁾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판사 사찰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별조사단 또한 이러한 동향 파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는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판단하였다(조사보고서 111면).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 [322]

김☆☆ 심의관이 2016. 3. 7 작성한 문건으로, 2014년 김○○ 판사⁷⁾가 투표에 의하여 최초로 의장으로 선출된 점,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며 2015. 4. 16. 게시판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글을 게시한 박노수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등 핵심 그룹의 지지를 받고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출마 예정인 점을 검토 배경으로 명시하면서, 우리법연구회가 판사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대법원장이 권한을 스스로 일정 정도 내려놓는 관행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박노수 판사에게 출마 제안을 하였고, 박노수 판사가 최근 출마에 대한 결심을 굳혔다고 상세하게 출마 경위를 기재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박노수 판사가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 당선되면 건의문과 성명서의 채택, 사무분담에 관한 지침 개정 시도, 법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각종 사법행정적 조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면서, 대응방안으로 단독판사 중 최선임자인 “정○○ 판사가 의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핵심 그룹의 지원을 받는 박○○ 판사의 당선을 저지할 필요 있음”, “핵심 그룹의 주장에

5) SBS “현직 판사 "박상옥 후보, 대법관 임명 반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933720&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으로 접근 가능.

6) 당시 법관이었던 윤나리 변호사는 박노수 판사의 지지글을 올린 판사는 바로 법원장 호출을 받고 ‘같은 법원에 있는 다른 판사들이 부담스러움을 느낀다’는 취지로 글 삭제를 설득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한겨레21, “지금 필요한 건 판사 독립”,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4085.html으로 접근 가능).

7) 위 문건상 김○○ 판사에 대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소신이 강하다, 우리법연구회 등 핵심 그룹과 친분이 깊은 편은 아니다 등의 내용이 프로필로 정리되어 있다.

무관심한 다수의 일반 판사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선거 공약 발굴 필요”라고 명시하면서, 김★★ 기획법관, 정◆◆ 판사(정○○ 판사와 같은 방 사용)를 지원단으로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선거 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 선거 전략

- 단독판사회의 경선 당일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정○○ 판사를 추천하고 지지 발언을 할 판사 협의
- 정○○ 판사를 지지할만한 단독판사들(예: 형사단독판사)이 가급적 회의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
- 정○○ 판사의 경우 “단순히 최선임자로서 관례에 따라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단독판사들의 복지 및 실질적인 지위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되려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 <끝>

이는 법원행정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견제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저지시킬 후보에 관하여 지원단까지 구성하여 구체적인 선거 전략까지 모색하는 등 마치 선거 캠프와 같은 역할을 하였던 점을 잘 보여주는 문건이다. 추가조사위원회는 위 문건에 대하여 “대응방안의 실행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부적절한 사법행정권의 행사”라고 평가한 바 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김☆☆ 심의관은 “지원단의 구성”, “정○○ 판사가 의장 경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음” 부분은 임종헌 차장으로부터 전해들은 대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임종헌 차장은 지원단의 구성은 지시한 적 없고 정○○ 판사의 완주 의사 피력에 대해 전달한 기억이 없다고 하여 부인하였고, “지원단”으로 지목된 김★★ 기획법관, 정◆◆ 판사는 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연락받은 적이 없고, 정○○ 판사의 완주 의사 또한 행정처 관계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조사보고서는 종합적으로 “지원단의 구성” 등 검토는 실행 여부를 떠나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지적하였으나, 언급된 법관의 구체적인 관여 정황은 확인할 수 없었는바, 실제 실행 여부는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조사보고서 110면).

◆ 판사회의 순기능 제고방안(운영 측면 검토) [323]

위 문건은 기획제2심의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조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개된 문건이다. 위 문건은 ‘인사모’ 활동, 내부판사회의 의장을 선출직으로 변경한 인천지방법원 판사회의 내규 개정,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에 대한 판사들의 건의문을 “사법행정에 간섭을 목표로 판사회의를 이용하려는 조직적 시도 포착”이라고 정리하고, “내부판사회의 폐지 등을 통한 판사회의 억제 시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렇다고 판사회의 활성화 취지의 내규 규정을 주도하여 체계모니를 선점하는 것은 “내규 개정의 비가역성”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하면서, “판사회의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순기능 극대화 필요”라는 관점에서 판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검토한 문건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현재 법원장이 판사회의에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식을 전환하여, 판사회의 전에 법원장이 다각도의 의견 수렴 노력을 하자는 것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며, 판사회의 관련 전 과정에서 법원장의 체계모니 장악, “핵심세력”의 방안인 내부판사회의 등을 통한 소통을 무력화하는 것을 기대 효과로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핵심세력은 여러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등장하는 “우리법연구회 핵심그룹”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판사회의를 “사무분담을 둘러싼 법원장들과 판사들의 전쟁터로 인식”한다고 기재하면서, “사무분담 등 인사문제”에서 “근무여건 개선 등 복지문제”로 안건의 무게 중심을 이동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법원행정처가 “사무분담”에 관한 판사들의 의견 제시 행위만으로 법원행정처가 개별 판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핵심 수단

으로써의 “인사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위 문건은 “부적절한 안건에 대한 의연한 대응”이라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기본전제에 어긋나는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사법행정권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판사회의는 자문기구로 두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일선 법관들에게 사법행정, 판사회의에 관한 헌법적/법률적 한계를 명확히 인식”시키고, “판사회의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비민주적’ 행위로 규정”하며, “이미지 싸움”에서 “부당한 요구 제기하는 판사에게 선동적, 감정적, 조직적, 독선적, 불법적 등 부정적 이미지를 낙인”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관련 현안 검토 [192, 279, 290]

정◆◆ 판사가 임종헌 차장 지시로 작성하여 보고한 문건으로, 박노수 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것에 관하여 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전망과 대응방안을 매우 상세하게 기재한 문건이다. 법원행정처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던 판사가 의장으로 선출되었던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와는 사뭇 다르게, 매우 상세한 결과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기재되어 있다.

“결과분석”에 있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인원 분포(민사단독 87인, 형사단독 22인, 파산단독 22인)를 고려하여 박노수 판사와 같은 소속인 파산단독 23인, 주요 우호 인사들이 다수 포진한 신청단독 8인을 박노수의 우호세력으로 파악하고, “우호세력은 전체 투표율보다 다소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였을 것임”이라는 분석 하에 박노수 판사에게 약 21표, 정○○ 판사에게 약 19표가 투표되었으리라고 가정한 후, 나머지 득표는 대부분 민사 단독으로부터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하면서 박노수 판사에게 약 44표가 투표되었으리라고 보고, 이를 토대로 “표면적인 투표 결과보다 여론은 더 좋지 아니한 상황으로 추측”, “제한

된 상황과 정보하에 형성된 여론이고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린 결과일 수 있으므로 향후 개선의 여지는 매우 큼”이라고 하여 박노수 판사의 ‘우호세력’이 아닌 판사들이 다수 지지를 보낸 것을 ‘여론이 더 좋지 아니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우호세력’이 아닌 판사들이 박노수 판사의 지지기반이 되지 않도록 포섭하는 것을 ‘개선’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전망” 부분에서는, 박노수 판사가 단독판사 의장 직선의 연례화,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운영에 영향력 행사, 사무분담내규 개정 건의 추진을 목표로 삼을 것으로 보고, 각 목표 별 전망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단독판사 의장 직선의 연례화”에 관해서는, “사법행정 당국에서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하면서, 2015년 단독판사 의장 직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서울중앙지법 기획 라인의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결과 후보를 내는 것조차 실패하였음”이라고 평가하여 2015년 단독판사 의장 선거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획 라인이 개입한 점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서술하고 있다. 나아가 위 문건은 2015년과 달리 의장 직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의장 직선 체제가 상시화되고 당연시되는 것이 “더욱 큰 문제”, “판사회의 실질화를 통하여 법관들이 쉽게 세력화될 우려가 있음”이라고 판단하면서, 판사회의의 역량 강화·장악이 사법행정위원회 역량 강화·장악으로 이어지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세력·조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판사회의의 실질화에 반대하고자 판사회의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운영에 영향력 행사” 목표에 관해서는, 인권법 커뮤니티에서 판사회의의 실질화·정례화, 판사회의를 통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선출방식 건의 및 위원회 위원 참여, 판사회의의 기관(의장, 간사, 운영위원) 선출방식에 있어서 직선제 도입 및 후보 참여, 전국법관회의 창립을 위한 연구 및 기초작업을 2016년 판사들이 해야 할 일로서 논의한 것을 인용하며 “사법행정위원

회 구성·운영에 영향력 행사”가 “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로 예상”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미 공지된 사법행정위원회의 추진 일정에 따르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요소로 삼아야 함”이라고 기재하여, 판사회의가 중심이 된 사법행정위원회의 위원 후보자 추천과 안건 제출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⁸⁾

“대응방안”에 관하여는, “전체 기조”를 “박노수 판사에게 불필요한 힘을 실어 주지 않는 것을 각종 판단의 최우선적 고려 요소로 삼아야 함”, “실질적인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은 의장 직선제의 상시화를 초래할 수 있음”이라고 하여, 법원행정처가 판사회의의 실질화를 견제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요 목표 별로도 “구체적 대응” 방안이 명시되어 있는데, 특히 “사무 분담내규 개정 건의 추진”에 관해서는, “중요 대응 논리를 사전에 오피니언 리더 법관들에게 주지시키고 판사들에게 충분히 전파하여 신중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사전에 여론 조성 활동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음. 선거와 달리 ‘사전선거운동’의 부담이 없음. 2014년에 이미 이슈화된 바 있어서 사전에 문제 제기과 논의를 하는 것이 어색하지도 아니함”, “의장 선출의 경우와 달리 보이콧 등의 방식도 가능하므로 사전에 준비한다면 의장 선거 시보다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임”이라고 하여, 법원행정처가 매우 적극적으로 판사회의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점이 드러난다.

특별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임종현 차장은 [50], [51] 문건에 비추어 위 문건의 “서울중앙지법 기획 라인의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결과 후보를 내는 것조차 실패하였음” 부분은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진술하였고, 2015년 단독 판사회의 의장이었던 장○○ 판사는 김★★ 기획법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특별조사단은 사법행정담당자가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대해 부적절한 관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8) 한편, 공개 문건 중 비슷한 시기에 2016. 4. 5.자 “사법행정위원회 안건제출 활성화 관련 보고”[20], 2016. 4. 8.자 “사법행정위원회 향후 운영계획”[21]이 작성되어, “특정 성향”의 사법행정위원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판단하였다(조사보고서 109면 참조).

◆ 서울중앙 수석부장판사 재편 방안 [193]

노◆◆ 심의관이 2016. 3. 26.경 임종헌 차장 지시로 작성하여 보고한 문건으로, “최근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회원 중심으로 판사회의 활성화 움직임 → 판사회의 운영을 둘러싼 법관 내부 갈등 우려 및 판사회의 의결을 통한 법원장의 사법행정권 견제, 도전 예상”을 검토 배경의 하나로 삼고 있고, 수석부장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내부 소통 한계”를 들면서, “기존 사법행정에 비우호적인 31박노수 판사(회생단독)가 경선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어 판사회의 활성화 예상”, “판사회의를 통해 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를 견제하려는 시도(예컨대 희망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무분담 기본원칙 의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밖에 사법행정 현안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집단적으로 제시할 가능성 있음”, “수석부장이 단독판사들과 회식 자리 등을 자주 가지면서 단독판사들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슈에 관하여 대응논리를 적절히 설득함으로써 판사회의가 집행부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법원행정처는 인사나 사무분담결정 등 사법행정을 매개로 법원장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이에 방해가 되는 판사회의의 실질화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수석부장 체제를 이용하고, 더 강화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 서울중앙 수석부장 재편 실행방안 [194, 195]

노◆◆ 심의관이 2016. 4. 5.경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하고, 2016. 4. 12.경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앞서 검토했던 서울중앙 수석부장 재편 방안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이원화(증원)” 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내용 중 시행시기에 관하여 2016년 8월로 할 것인지, 2017년 2월로 할 것인지를 검토하면서, 2016년 8

월 안의 장점을 “서울중앙 민사단독판사 조기에 장악 → 2016년 하반기 단독판사회의 제어, 2016년 하반기에 ‘희망 최우선’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관한 판사회의 개최 예상”으로 꼽고, 단점을 “정기인사 시기가 아닌 시점에 민사수석부장이 2인으로 늘어날 경우 민사단독판사들에 대한 장악 시도로 오해할 가능성”이라고 꼽으면서, 위 단점 불식을 위해 “사전에 법률신문을 통해 서울중앙 민사부의 비대화를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하는 방안 검토”라고 기재하고 있다. 한편 2안인 2017년 2월안의 단점으로는 “단독판사회의 활성화를 통한 사법행정권 도전에 대하여 대응시기를 놓칠 우려 ⇨ 대법원장님 임기 말 리더십 타격 예상”이라고 기재하여 그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판사회의를 제어하고자 민사수석 부장판사 이원화 결정을 하였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실제 2017. 2.경 “민사제2수석부장”자리가 신설되었다.⁹⁾

특별조사단은 민사수석부장 판사 제도를 재편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나,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결과에 따른 대응 필요성”에 기초하여 재편 여부를 검토한 부분과 단독판사회의 제어를 고려하여 실행시기를 검토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조사보고서 111면).

◆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 연구반 개요 - 가칭 「충실한 재판 연구반」 [199]

김★★ 당시 서울지방법원 기획법관이 2016. 5. 13.경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가 구성한 ‘충실한 재판 연구반’의 개요를 정리한 것이다. 구성에 대해서는 “김○○, 이○○ 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목적과 운영 일정을 정리하며, “판사들의 수다 I”라는 제목의 글 전문을 첨부했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의 활동을 견제하고 관리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9) 법률신문, “서울중앙지법, 지재권 전담 ‘민사 제2수석부장’ 신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8119>으로 접근가능, 검색일 : 2018. 6. 22.)

특별조사단은 위 문건에 관하여 연구반 구성원의 특정 연구회 회원 여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는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판단하였다(조사보고서 111면).

◆ 기타 비공개 문건

그 외 미공개 문건 중에서도 2014. 8. 8.자 “서울중앙단독동향보고”[49], 2014. 9. 22.자 “단독판사회의결과보고”[54], 2016. 4. 8.자 “판사회의, 운영위원회구성관련 보고(대전지방법원)(차○○)”[55], 2016. 4. 18.자 “서울중앙단독판사회의현황및전망(김★★)”[48], 2016. 8. 1.자 “서울중앙민사단독상반기통계분석(김★★)”[53], 2016. 9. 22.자 “서울중앙단독판사회의경과보고(김★★)”[49] 등이 관련 문건으로 보인다(3차 조사보고서 첨부 문서 목록 참조).

다. 사법농단의 실태

앞서 살펴본 각 문건들을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2014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의장으로 당선된 후 단독판사회의에서 사무분담에 관한 의견 수렴 등 법원행정처의 인사권에 관련된 의제들에 관심을 갖자 이를 경계하였고, 위와 같은 판사들의 움직임을 제어할 목적으로 2015년, 2016년 단독판사회의의 의장 경선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이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판사가 직선제에 따라 의장으로 당선되고, 판사회의를 실질화하여 사법행정위원회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모든 문건에는 ‘판사회의의 실질화’가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는 뉘앙스가 분명하고, 그러한 명시적 표현도 기재되어 있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수호**라는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법행정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진 판사회의를 무력화시키려고 한 것이다.

법원조직법 제9조의2는 “사법행정에 대한 자문기관”으로서 “판사회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있으며,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마련된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제14조에서 각급법원이 판사회의의 결정에 따라 그 일부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내부판사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와 같은 내부판사회의의 의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안을 미리 각급법원의 장에게 통지하며, 내부판사회의의 설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판사회의가 사법행정에 관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그 법적 목적에 지극히 충실한 것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의 의장 선거가 민주적 방식인 경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법원행정처가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다. 또한 경선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가 정한 방식에 따른 의장 선출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선거 개입을 진행한다면, 이는 자문기구인 판사회의의 운영을 침해하는 행위임은 명백하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판사회의의 역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판사회의의 실질화를 막고 형해화시킨다는 위법한 목적으로, 행정처 소속 판사들로 하여금 입맛에 맞는 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의 의장으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판사 사찰, 구체적인 선거 개입 방안까지 고안하는 문건, 선거 이후 새로 선출된 의장 및 집행부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의 문건을 작성하게 하였다. 더군다나 문건들에는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백안시한 점이 역력히 드러난다. 이는 실질적으로 사법행정권의 행사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공작행위이고, 판사회의의 업무 방해를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결국 이는 문건의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사법행정의 형식적인 권한에 기대어 실질적으로는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하여 지시를 받은 판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가 **단독판사회의의 활동을 방해하려 노력한 것은 사법행정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판사들이 자신들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법행정 사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에 관하여 서로간의 의견을 모아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른 의견을 경청하여 보다 타당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는 커녕 단독판사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표명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특정인을 ‘우리법연구회’ ‘핵심세력’ 등으로 낙인찍으며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당선을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당선 후에도 그 영향력을 축소시키려 한 법원행정처의 방식 또한 위험하고 반민주적이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학회나 ‘인사모’는 물론 ‘이판사관’ 등 인터넷 카페에서의 표현행위까지 억압하려고 하는 등 의견 표명 자체에 대해 억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판사들이 사법행정 사안에 대해 침묵하도록 하는 자기검열기제를 작동시키고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비판적 의견 표명조차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라. 평가

3차 조사를 거치면서 법원행정처가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는 판사들의 활동을 차단한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조사를 통해 드러난 실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판사회의의 본연의 목적에 따라 사법행정에 대한 자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막고 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에서 비롯되는 판사들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출마 예정자의 사찰, 다른 출마 예정자의 지원 방안 검토, 당선자의 활동에 지장을 주기 위

한 방안의 검토 등 부당한 행위를 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법행정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단지 법원행정처가 가진 형식적 권한에 기대어 소속 판사들에게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다. 법원행정처가 소속 판사들인 문건 작성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문건을 여러 차례 작성하게 한 것만으로 직권남용죄에는 충분히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권 남용 사례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철저히 틀어쥐고 개별 판사들을 통제해야만 성립 가능한 ‘재판거래’ 의혹의 동전의 양면임을 고려할 때, 당해 사안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향후 사법부 독립을 위한 개혁 방안 수립에 있어 필수적이다. 특히, 조사단의 조사에서 부족한 부분인 실제 문건 기재 내용의 실행 여부까지 철저히 검증하고 발본색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추가 조사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조사단은 2016년 단독판사회의 의정 경선 개입의혹의 구체적인 실행 사실에 관해서는 입증에 실패하였다. 이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조사단 조사의 한계로 보인다.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관하여 여러 차례의 문건이 작성 및 보고되었던 점, 적시된 실행 방안 등이 매우 구체적인 점, 문건의 작성자와 문건 작성 지시자(임종헌)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실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제안 받지 않았다는 ‘지원단’ 판사들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은 실제 실행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강제 수사를 통해 문건에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된 선거 개입 방안이 실제 실행되었는지 여부가 반드시 확인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원행정처는 박노수 판사가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뒤에도 법원행정처는 위 단독판사회의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민사수석부장체제의 재편을 검토하였고, 당시 실행시기 [2안]으로 검토된 2017년 2월 민사 제2수석부장 자리가 신설되었다. 그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가 업무 운영에 실질적인 지장을 받았는지가 확

인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특별조사단의 조사는 ‘민사수석부장체제의 개편 자체는 필요했다’는 식으로 넘어갔을 뿐, 실질적으로 그러한 조치가 단독판사회의 실질화에 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이 부분 또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만약 법원행정처의 검토 내용이 실제 실행되어 의도대로 작동했고, 추후의 구체적인 지시 등에 따라 단독판사회의의 운영을 방해하였다면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남용에 따른 권리행사방해죄 또한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법원행정처가 판사회의의 실질화 움직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한 것이 위와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의 주요한 원인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상의 고위 법관들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임종헌 전 차장에게 일련의 지시를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한 것 또한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조단 조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위와 같은 의혹과 한계점들을 낱낱이 해소하는 방향으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절실하다. 나아가 일선에서 재판 업무를 하는 판사들이 사법행정의 문제에 있어 법원행정처의 ‘통제와 사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양심에 따른 재판, 국민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재판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직접 수행하는 법관으로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조차 심각하게 억압당했던 사법농단의 실태가 우리의 사법제도를 국민과 멀어지게 한 작금의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성찰의 방향은 사법행정 제도가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는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